

#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연구

## Empirical Study on Injury Management System of Fire-Fighting Officer

권설아\*, 오명근\*\*, 이주호\*\*\*, 이민규\*\*\*\*, 박상호\*\*\*\*, 현승효\*\*\*\*, 류상일\*\*\*\*\*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북연구원\*\*,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동의대학교 법학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Seol A Kwon(seolakwon@chungbuk.ac.kr)\*, Myeong Keun Oh(omk@cri.re.kr)\*\*,  
Ju Ho Lee(ejuo79@naver.com)\*\*\*, Min-Kyu Lee(baroo@chungbuk.ac.kr)\*\*\*\*,  
Sang Ho Park(sanghop@deu.ac.kr)\*\*\*\*\*, Seung Hyo Hyeon(po@chungbuk.ac.kr)\*\*\*\*,  
Sang Il Ryu(samuel@deu.ac.kr)\*\*\*\*\*

### 요약

재난현장의 극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부상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공상에 비하여 공상승인이나 관련 절차는 복잡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실증분석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에 대한 경험 빈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다. 둘째, 공상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상승인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신청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가 필요하고,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상제도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보상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상신청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소방공무원 | 공상관리제도 | 공상신청 | 공상처리 | 공상 |

### Abstract

The frequency of official injury of fire-fighting officers exposed to an extreme situation in disaster area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In spite of increase of injury, procedures of injury approval are complex, so the working environment of fire-fighting officers is very poor in terms of safety management. This study was, therefore,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the injury management system for fire-fighting officer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system for those in Busan city. The finding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injury experienced by them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occupations; second, application for injury is not actively made; third, fire-fighting officers should bear the expense if injury is approved. On the basis of such an analysis on actual conditions, an analysis on policy factors for improving the injury management system shows: first, various high-risk matte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eview of application for injury, for improvement factors of the application for injury, whil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benefit and support project for injured officers, for operation improvement factors of the injury management system, and the compensation act should be improved, for the improvement factors of the injury system. Second, it is urgent to develop damage prevention and coping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the injury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the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application for injury and the extension of benefit and support project for injured officers should be realized as soon as possible, moreover, the enhancement of directors' interest and support is also required.

■ keyword : | Fire-fighting Officer | Injury Management System | Application for Injury | Treatment of Injury and Injury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8059946)

접수일자 : 2019년 01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2월 12일

수정일자 : 2019년 02월 12일

교신저자 : 류상일, e-mail : samuel@deu.ac.kr

## I. 서론

위험사회의 등장으로 일상적인 위험과 복합재난이 늘어남으로 인해 매년 소방공무원들의 구조 활동에 나서는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출동건수는 63만 197건이었는데 2016년 75만6,987건, 2017년에는 80만 5194건으로 증가했다. 구조건수도 3년 전에 47만9,786건에서 2016년 60만9,211건, 2017년 65만5,485건으로 늘어났다 구조건수만 해도 일일 평균 2015년 1,314건에서 1669건(2016년), 1796건(2017년)으로 상승했다[1].

증가하는 출동건수에 대비하여 소방공무원의 공무 중 부상 숫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3년 291명에서 2014년 325명, 2015년 376명, 2016년 448명, 2017년 602명으로 4년만에 185%가 증가하였다. 2018년도 상반기 부상자만 424명이 발생하였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848명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부상자는 총 2,042명으로 유형별로 봤을 때 구급(475명, 23.2%), 화재진압(394명, 19.3%), 구조(208명, 10.2%) 순이었다[1].

또한 소방관들은 빈번하게 폭언·폭력으로 인하여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노출돼 있으나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오히려 역으로 악성 민원이 제기돼 고통 받는 등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형사 고소·고발 사안 564건 중 대부분은 벌금형에 처했으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147건에 불과하다. 이중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2].

이렇듯 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의 극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들도 화재, 교통사고, 재난현장의 구조·구급활동 현장에서 사고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발생한 사고와 질병은 예측이 불가능한 직무환경에 따라 복잡하고, 이러한 직무환경특성으로 공상처리 인정기준과 처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1][3].

소방의 업무 역할과 소방서비스의 범위는 다양해지

고 있는 반면에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보건에 대한 사례연구, 실증연구, 질적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정책개발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4-9]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다양한 형태의 사건과 사고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이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이 갖는 한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근무환경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직무형태, 실태, 작업환경, 업무특성, 근무여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확장성을 지닌다.

이는 현대사회의 복잡화로 인한 대규모 재난재해의 환경적 영향여건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상제도 개선을 위한 실재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 II. 이론적 논의

### 1.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

공상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에 의거하여[10]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의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는 공무원연금법의 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였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에 대한 개선사항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예방·대비적 차원과 대응·복구적 차원의 관리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예방·대비적 차원의 소방공무원 공상관리 제도는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이다. 소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공무원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대응·복구적 차원의 소방공무원 공상관리 제도는 보상·급여·복귀 지원과 같은 내용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이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 활동을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결정하게 된다[11].

급여의 종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8조에 의거하여 요양급여, 재활급여, 재활동비, 심리상담비,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이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의 마련,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조사·연구, 공무원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공상 승인 비율을 보면 2,445개 공상 신청 건 중 2,208명이 승인됐다. 하지만 2016년-2017년 암 등 희귀질환 관련 공상은 요청 21건 중 12건만 인정돼 57%의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 독일, 미국의 경우 직업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의 인정기준은 다르지만 독일은 세부적으로 직업병에 대해 나열해왔고 미국은 직업병과 공무원의 연관관계를 국가에서 입증토록 명문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일반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질병유형별로 구체적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 재해의 인정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12].

따라서 공무원 재해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해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 2. 선행연구 검토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문헌연구와 실태(실증)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헌연구를 살펴보면 제도와 공상요인과 관련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한상용(2009)의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

상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 등이 있다. 순직자의 경우에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한상용(2009)은 이러한 법률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직무상 질환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기준마련과 체계적인 진료 체계의 확립과 공상자 자활프로그램 구축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13].

김태범(2016)의 소방공무원 현장안전 저해요인에 대한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공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그 중 4M 분석모델을 적용한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인적요인 외에도 정보 및 조직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써 현재 소방공무원 사고성 재해를 조사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도구로 그 적용가능성 및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14].

김우민(2018)은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소방공무원 개인별 유해인자 노출 기록시스템 제안하고 있다[15]. 조승현(2016)은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면을 조직, 장비, 교육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각 국면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방안을 찾아 제시하였다[16].

둘째, 실태(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사례와 유사 직종과의 비교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방창훈·홍외현(2010)은 경북지역의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공상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공상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일반 소방공무원에 비하여 높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각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보상부적절, 조직체계, 직장 문화, 직무불안정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남자평균에 비하여는 물리적환경, 직장문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윤장원(2015)은 공상을 신청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상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상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상발생 당시 상황, 공상발생 전·후의 요통 정도, 흡연등 개인적 요소, 직무스트레스, 직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상발생 이후에 음주가 증가하고, 요통과 관련한 건강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상발생의 영향요인이 검증되었다[18].

김용태(2015)는 경찰·소방공무원 의료지원 토론회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상이처 의료지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하며, 상이등급 미달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역설하였다[19].

국제 소방 압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소방직의 공상관리를 위한 입법제도 제안을 진행하고 있다.

Ma, et. al(2005)의 1972년부터 1999년도까지 플로리다주의 소방공무원 사망 원인에 대한 연구[20], Youakim(2006)의 소방공무원의 암 위험성에 대한 정량적 검토[21], Haas, et. al(2003)의 소방공무원의 잠재적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22], Guidotti(1995) 소방공무원의 사망원인에 대한 연구[23], Golden, et. al(199)의 소방공무원의 암 발병 위험성에 대한 연구[24], Scannell & Balmes(1995) 소방공무원의 폐건강에 대한 연구[25] 등의 다양한 기초연구에 근거를 두고 공상관리 제도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Petersen, et. al(2018)의 덴마크 소방관의 불임에 관한 연구[26], Harrison, et. al(2018) 소방관 업무상 재해 감소를 위한 이론연구[27], Pedersen, et. al(2018) 덴마크 소방관의 업무상 만성 질환에 대한 연구[28], Gainey, et. al(2018) 소방설비와 질환에 관한 연구[29], Harris, et. al(2018) 미국과 캐나다 소방관의 코호트 연구[30], Hu, et. al(2018) 소방관의 건강관리 정보 공유 및 제공에 따른 구조화 분석[31], Petersen, et. al(2018) 덴마크 소방관 코호트 연구[32], Landgren, et. al(2018) 911테러 관련 소방관의 질환에 대한 추적연구[33] 등은 소방관의 업무상 재해를 줄이기 위한 이론에 근거한 기초자료로 용이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근거 연구는 관련 입법제정에 도움을 준다. 미국과 캐나다의 소방관련 직업병을 추적 연구하는 IAFF(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re Fighters)에서는 관련 입법추진, 교육, 소방관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질병의 추적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실제적 입법추진을 위하여 입법작업, 환자 옹호, 생존자의 고용권리에 대해 각각도로 연구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2007년 5월 4일 캐나다에서는 뇌, 방광, 신장, 대장, 비호 지킨 림프종, 백혈병, 요관, 식도등과 관련한 암 질환에 대해 업무상 질환인 공상으로 처리하고 있다[34].

본 연구가 갖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선행연구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이전의 선행연구들이 담고 있는 한계점을 개선하여 개정되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개정된 제도의 한계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위해요인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또한 국내 연구는 해외 사례연구에서 살펴보듯이 구체적인 질병 근거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률제정을 위한 역할에 대한 근거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원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III.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분석

#### 1.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 (1) 빈도분석

이 연구는 부산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1,604명으로 현원 2,898명을 기준시 55.3%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웹서베이(Web Survey)방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내부 온라인 통해 설문을 등록하고 설문 대상자에게 참여방법을 알려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항목은 공무 상 부상경험, 공상승인신청 여부, 공상승인 시 자비부담비용, 공상승인신청 하지 않은 이유 등의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2) 상대적 중요도 분석

상대적 중요도 분석 기법인 AHP분석은 다기준의사결정(Multi-attribute decision making)에 기초한 것으로 상충하는 여러가지 기준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한편 상대적 중요도 분석인 AHP 기법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상충되는 속성요소의 가중치를 도출하여 우선순위와 최적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주관적 응답에 대한 오류가 포함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상기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시간과 자원의 제약안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AHP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점으로 기인하여 국내외 대기업, 공사, 대학에서 주요 의사결정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37].

따라서 본 연구도 전문가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고자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설계는 위의 선행연구에서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한상용(2009), 김태범(2016), 김우민(2018), 조승현(2016), 방창훈·홍외현(2010), 윤장원(2015)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AHP분석 계측을 위한 설문도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13-18].

첫째,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요인(要因)과 각 세부 요인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개의 측정지표와 각 지표별로 3개씩의 측정기준을 합하여 총 9개의 측정(항목)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1.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구성요소

구성요소	세부 구성요소
공상제도 개선	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원제도(조례) 개선
	공상관리 전담조직 구성
	보상 관련법의 개선
공상신청 개선	공상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공상신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
	민간/비영리단체(재단) 후원 활용 등 협력 강화

둘째,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은 앞에서 제시한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측정지표 및 측정기준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각각 두 개씩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방법을 활용하는 AHP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셋째,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 즉, 표본은 소방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선정하였다. 즉, 소방기관, 대학, 연구소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8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 동안 E-mail과 직접 방문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20부 중에서 15부를 회수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계층분석절차(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기법을 실시하였다. 넷째, 분석의 신뢰성은 전문가 개개인의 판단상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이하 'CR')을 참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과학연구에서는 CR이 20%(0.2)보다 작을 경우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35][36]. 이 연구에서도 각 계층별 가중치의 CR은 20%(0.2) 미만에 대해서만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수된 설문지 총 15부 중에 CR값이 20%(0.2) 이상인 5부를 제외하였고, CR값이 20%(0.2) 미만인 10부에 대해서만 Expert choice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응답자 현황 및 특성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성별	남		여			
	1,523(95%)		81(5%)			
연령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179 (11.2%)	590 (36.8%)	621 (38.7%)	214 (13.3%)		
업무 분야	본부	소방서	소방 학교	119 안전센터	구조대	
	73 (4.6%)	356 (22.2%)	14 (0.9%)	989 (61.7%)	172 (10.7%)	
직급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5 (0.9%)	74 (4.6%)	262 (16.3)	549 (34.2%)	375 (23.4%)	329 (20.5%)
재직 기간	5년 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1년이상	
	361(22.5%)	311(19.4%)	314(19.6%)	231(14.4%)	387(24.1%)	
학력	고졸	2-3년제 대학교졸	4년제 대학졸	대학원 졸		
	226(14.1%)	461(28.7%)	840(52.4%)	77(4.8%)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우선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1,523명, 여성 81명으로, 남성이 9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이 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담당업무분야를 살펴보면, 119안전센터가 6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방서 22.2%, 구조대 10.7%, 소방본부 4.6%, 소방학교 0.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음, 응답자의 직급을 살펴보면, 소방장이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방교 23.4%, 소방사 20.5%, 소방위 16.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재직년수를 살펴보면 '21년이상'이 2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미만' 22.5%, '10년이상~15년미만' 19.6%, '5년이상~10년미만' 19.4%, '15년이상~20년미만' 14.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 중퇴/졸업이 5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3년제 대학교 졸업/중퇴 28.7%, 고등학교 졸업이하 14.1%, 대학원 중퇴/졸업 4.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 3. 빈도분석 결과 및 논의

### (1) 공무 상 부상 경험

공무 상 부상을 입은 경험에 대해서, “아니오”란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란 응답이 25.4%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공무 상 부상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1/4가량의 소방관들이 공무 상 부상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부상 비율이 타직군 등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예	408	25.4
아니오	1196	74.6
합계	1604	100.0

그림 1. 공무 상 부상 경험

특히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 공상자

수는 2013년 291명에서 2017년에는 602명으로 4년만에 2.1배가 증가했다. 따라서 공무 상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제고를 위한 보편적 기준 마련과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본다[38].

(2) 공상승인신청

공무 상 부상을 입은 부상에 대하여 공상승인신청을 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아니오”란 응답이 5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란 응답이 40.7%였음. 이를 통해 볼 때 응답자들의 60%가량이 공상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예	164	40.7
아니오	239	59.3
합계	403	100.0

그림 2. 공상승인신청

공무원연금공단에 의하면 2011년-2015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의 암 발병에 대한 공상승인 인정이 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공상승인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질병과 소방직무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9].

(3) 공상승인 시 자비부담비용

공무승인 시 부상치료 중 자비부담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50만원 미만이 3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없음이 29.2%, 100만원 미만이 20.1%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없음	64	29.2
50만원미만	87	39.7
100만원미만	44	20.1
200만원미만	11	5.0
200만원이상	13	5.9
합계	219	100.0

그림 3. 공상승인 시 자비부담비용

(4) 공상승인신청 하지 않은 이유

공무상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상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미한 부상이 5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가 34.4%, 인사상 각종 평가 등 불이익 우려가 4.8%, 신청 절차를 몰라서가 3.5%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경미한 부상	130	57.3
신청 절차를 몰라서	8	3.5
인사상 각종평가 등 불이익 우려	11	4.8
기타	78	34.4
합계	227	100.0

그림 4. 공상승인신청 하지 않은 이유

4.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및 논의

(1) 전체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에 대해 소방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2. 전체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요인	공상제도 개선 요인	공상신청 개선 요인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
결과값 (상대적 중요도 %)	0.20	0.48	0.32
중요도 우선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 Ci &lt; 0.2

위와 같이 전문가들은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상신청 개선 요인이 48%로 1순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이 32%로 2순위로 중요시하였고, 공상제도 개선 요인이 20%로 3순위로 각각 중요시 하였다. 소방전문가들은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 공상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공상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 공상신청과 관련된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2) 하위 요소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에 대한 소방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위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3. 하위 요소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측정 지표	측정 항목	결과값	우선 순위
공상제도 개선	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원제도(조례) 개선	0.26	
	공상관리 전담조직 구성	0.31	
	보상 관련법의 개선	0.43	1순위
공상신청 개선	공상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0.43	2순위
	공상신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0.14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	0.44	1순위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	0.51	1순위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	0.36	
	민간/비영리단체(재단) 후원 활용 등 협력 강화	0.14	

\* Ci &lt; 0.2

위와 같이 전문가들은 첫째, 공상신청 개선 요인에서는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를 44%로 1순위, 공상신청 행정절차 간소화를 43%인 2순위로 중요시 하였고, 둘째,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에서는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를 51%로 1순위로 중요시 하였으며, 셋째, 공상제도 개선 요인에서는 보상 관련법의 개선을 43%로 1순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3) 복합가중치 고려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에 대한 소방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복합가중치를 고려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4. 복합가중치 고려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측정 지표	측정 항목	결과값	우선 순위
공상제도 개선	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원제도(조례) 개선	0.052	
	공상관리 전담조직 구성	0.062	
	보상 관련법의 개선	0.086	
공상신청 개선	공상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0.2064	2순위
	공상신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0.0672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	0.2112	1순위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	0.1632	3순위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	0.1152	4순위
	민간/비영리단체(재단) 후원 활용 등 협력 강화	0.0448	

\* Ci &lt; 0.2

위와 같이 복합가중치를 고려해 보면,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21.12%로 1순위로 가장 우선시 하였고, 공상신청 행정절차 간소화를 20.64%로 2순위,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를 16.32%로 3순위,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를 11.52%로 4순위로 각각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



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상신청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이 연구는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적용실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에 대한 경험 빈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다.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의 응답자들 대다수는 공상 상 부상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1/4가량의 소방관들이 공상 상 부상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부상 비율이 타 공무원 직군 등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군에 비하여 직무상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공상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업무상 공상빈도가 높은 것에 비해 실제적으로 공상승인신청은 과반수 이상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에는 경미한 부상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신청절차에 대한 정보부족과 인사상 불이익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상승인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9.2%를 제외한 70.8%의 과반이 넘는 비율로 공상승인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50만원에서 크게는 2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 공상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 공상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공상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 개선 등 공상신청과 관련된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공상신청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가 필요하고,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상제도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보상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상신청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실태를 분석하여,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미국, 유럽, 캐나다와 같은 선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입증이 어려운 질병에 대한 기왕적 추적연구와 계획적 추적연구가 체계적이고,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추적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미흡한 법률체계와 조직체계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다. 또한 위험과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직무상 특성을 고려한 소방공무원들의 공상처리 인정과 관련한 정책연구 수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재의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의 개선과 쇄신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실태분석에 따른 전문가 영역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개선방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공상관리제도의 큰 변동이나, 변화, 개선에 대한 전체적 수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공상관리제도의 연구의 중요와 필요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되었고, 본 연구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위기관리연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뉴스 1. 2018. 8. 13일자. '하루평균 1796건' 구조...생명위험에 노출된 소방관 ↑
- [2] 소방방재신문. 국가로부터 외면받는 소방관들... "재해보상제도 개선해야," 2018. 11. 28일자.
- [3] 방창훈, "공상 소방공무원의 안전보전에 관한 연구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23, No.5, pp.167-172, 2009.
- [4] 윤장원, "소방공무원의 근골격계 질환 : 2011년~2013년 공상신청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30, No.3, pp.133-137, 2016.
- [5] 배점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 및 우울간의 관계 비교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6] 조성일,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사례 분석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7] 안연순,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성 근골격계질환 발생기전 규명을 통한 공상 등 관리대책 수립연구: 요추질환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 [8] 이종환,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성 근골격계질환 발생기전 규명을 통한 공상 등 관리대책 수립연구: 요추질환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9] 강방식, 소방공무원의 직업병과 건강관리: 근무환경의 특성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1] 공무원재해보상법
- [12] 법률저널, "소방관 등 공무 연관성 입증 어려운 질병도 공상 인정해야," 2018.11.28.
- [13] 한상용,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4] 김태범, 소방공무원 현장안전 저해요인에 관한 4M 분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15] 김우민,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16] 조승현,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0, No.4, pp.323-343, 2016.
- [17] 방창훈, 홍외현, "공상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24, No.4, pp.79-85, 2010.
- [18] 윤장원, "소방공무원의 요통발생과 공상승인," 기초과학연구논문집, Vol.23, No.1, pp.87-92, 2015.
- [19] 김용태, 경찰 소방공무원 의료지원 토론회: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상이처 의료지원, 대한민국 국회, 2015.
- [20] F. Ma, L. E. Fleming, D. J. Lee, E. Trapido, T. A. Gerace, H. Lai, and S. Lai, "Mortality in Florida professional firefighters," 1972 to 1999. Am J Ind Med., Vol.47, No.6, pp.509-526, 2005.
- [21] S. Youakim, "Risk of cancer among firefighters: a quantitative review of selected malignancies," Arch Environ Occup Health, Vol.61, No.5, pp.223-254, 2006.
- [22] N. S. Haas, M. Gochfeld, M. G. Robson, and D. Wartenberg, "Latent health effects in firefighters," Int J Occup Environ Health, Vol.9, No.2, pp.95-103, 2003.
- [23] T. L. Guidotti, "Occupational mortality among firefighters: assessing the association," J Occup Environ Med., Vol.37, No.12, pp.1348-1356, 1995.
- [24] A. L. Golden, S. B. Markowitz, and P. J. Landrigan, "The risk of cancer in firefighters," Occup Med. Vol.10, No.4, pp.803-823, 1995.
- [25] C. H. Scannell and J. R. Balmes, "Pulmonary effects of firefighting," Occup Med., Vol.10, No.4, pp.789-801, 1995.
- [26] K. U. Petersen, J. Hansen, N. E. Ebbenhøj, and J. P. Bonde, "Infertility in a cohort of male Danish firefighters - a register based study,"

- Am J Epidemiol, Vol.19, No.10, pp.1-22, 2018.
- [27] T. R. Harrison, F. Yang, S. E. Morgan, J. Wendorf Muhamad, E. Talavera, S. A. Eaton, N. Niemczyk, V. Sheppard, and E. Kobetz, "The Invisible Danger of Transferring Toxins with Bunker Gear: A Theory-Based Intervention to Increase Postfire Decontamination to Reduce Cancer Risk in Firefighters," J Health Commun, Vol.22, pp.1-9, 2018.
- [28] J. E. Pedersen, K. Ugelvig Petersen, N. E. Ebbenhøj, J. P. Bonde, and J. Hansen, "Risk of asthma an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in a large historical cohort of Danish firefighters," Occup Environ Med. Vol.75, No.12, pp.871-876, 2018.
- [29] S. J. Gainey, G. P. Horn, A. E. Towers, M. L. Oelschlager, V. L. Tir, J. Drnevich, K. W. Fent, S. Kerber, D. L. Smith, G. G. Freund, "Exposure to a firefighting overhaul environment without respiratory protection increases immune dysregulation and lung disease risk," PLoS One. Vol.21, pp.1-15, 2018.
- [30] M. A. Harris, T. L. Kirkham, J. S. MacLeod, M. Tjepkema, P. A. Peters, and P. A. Demers, "Surveillance of cancer risks for firefighters, police, and armed forces among men in a Canadian census cohort," Am J Ind Med., Vol.61, No.10, pp.815-823, 2018.
- [31] M. A. Hu, J. C. MacDermid, S. Killip, and M. Lomotan, "FIREWELL," Health Information on Firefighter Websites: Structured Analysis, Vol.7, No.2, e12, 2018.
- [32] K. U. Petersen, J. E. Pedersen, J. P. Bonde, N. E. Ebbenhøj, and J. Hansen, "Mortality in a cohort of Danish firefighters; 1970-2014,"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Vol.91, No.6, pp.759-766, 2018.
- [33] O. Landgren, R. Zeig-Owens, O. Giricz, D. Goldfarb, K. Murata, K. Thoren, L. Ramanathan, M. Hultcrantz, A. Dogan, G. Nwankwo, U. Steidl, K. Pradhan, C. B. Hall, H. W. Cohen, N. Jaber, T. Schwartz, L. Crowley, M. Crane, S. Irby, M. P. Webber, A. Verma, and D. J. Prezant, "Multiple Myeloma and Its Precursor Disease Among Firefighters Exposed to the World Trade Center Disaster," JAMA Oncol. Vol.4, No.6, pp.821-827, 2018.
- [34] <https://www.fccancer.org>
- [35] Thomas L. Saaty, Decision Making for Leader: The AHP for Decisions in a Complex World, CA: Wadsworth, 1982.
- [36] 이재은, "한국의 재난관리정책 목표체계와 효과성 평가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Vol.13, No.1, 2003.
- [37] 김웅이, 김도현, 최연철, "전문가 설문에 의한 AHP 가중치 산출의 적용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운항학회지, Vol.18, No.3, pp.92-98, 2010.
- [38] 뉴시스, 소방공무원 건강·공상·자살 심각... "국가적 문제, 2018.10.15.
- [39] 메디컬투데이, 소방관 업무환경과 암 발병 상관관계 밝혀 줄 연구 절실, 2018.01.09.

## 저 자 소 개

### 권 설 아 (Seol A Kwon)

### 정희원



- 2011년 8월 : 한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정치학석사)
- 2017년 8월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 위기관리, 재난관리, 생활안전

오 명 근(Myong Keun Oh)

정회원



- 2012년 8월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19년 2월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8년 12월 ~ 현재 : 충북연구원 기획총무팀장

<관심분야> : 재난관리, 정책학, 공공행정

현 승 효(Seung-Hyo Hyeon)

정회원



- 2014년 8월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수료)

<관심분야> : 게임이론, 생명윤리, 과학기술정책

이 주 호(Ju Ho Lee)

정회원



- 2007년 2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10년 8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위기관리, 재해구호, 재난기금

류 상 일(Sang Il Ryu)

정회원



- 2003년 2월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07년 8월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소방행정, 재난관리, 사회네트워크

이 민 규(Min Kyu Lee)

정회원



- 2006년 3월 : 일본 교토대학교 법학연구과 행정학전공(법학석사)
- 2009년 3월 : 일본 교토대학교 법학연구과 행정학전공(법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지방자치, 지방재정, 정부간관계

박 상 호(Sang Ho Park)

정회원



- 1994년 2월 : 동의대학교 법학과(법학석사)
- 1999년 2월 : 동의대학교 법학과(법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동의대학교 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국가안전, 위기관리, 손해배상